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경 과실인 경우
법 제5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 제출 의무 위반 및 제7조의 조치 미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0조, 제11조, 제 12조, 제13조에 따른 제 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 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 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21조제2 항에 따라 확정된 보 호조치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 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19조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자 료제출 등 거부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